

# 보도자료



## 2020년 7월 1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4.(화) 오전 11시 보도 가능)

	(= 12,7 0 0,7 0 0 = 1 11 1 == 10,7								
배포일시	2020. 7. 14. (화)	담당부서	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						
담당과장	조현훈 과장(043-870-5420) 신국범 팀장(043-880-5831)	담 당 자	김국호 연구관(043-870-5427) 하영선 사무관(043-870-5425) 서영호 차장 (043-880-5632)						

## 용도·기준에 안맞는 구명조끼 구입·사용, '각별히 주의해야'

- 국표원·소비지원, 구명조끼(구명복, 부력보조복, 수영보조용품)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 발표 -
- 사용장소와 체증기준에 맞지 않는 구명조끼 사용 소비자가 조사대상의 70%(안전사고 우려)
- ❷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·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%에 달함
- ❸ 최소부력 기준에 미달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리콜명령 처분
- □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: 이승우)과 한국소비자원(원장 : 이희숙)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시즌에 앞서,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(4~7월간)하고,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.

## < 소비자원, 유통실태조사 결과 >

- (설문조사)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(556명) 대상의 설문 조사에서는 절반이상(298명, 약54%)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
  - 특히, 69.4%(386명)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· 사용중에 있어, 어린이, 노약자 등 안전취약 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.

#### < 제품별 법상 안전기준 및 용도 구분>

구 분	구 분 스포츠형 구명복		수영보조용품(착용형)	
<b>안전기준</b> (예시) 최소부력 40kg 기준 시	75N 이상 35N 이상		25N 이상	
용도	해변가, 악천후 조건 등에서 사용	안전요원이 있는 보호 시설 인근에서만 사용	안전확보와 상관없는 단순 수영보조기구	
관련 법령	전기용품및생횔 (안전확	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(안전인증 대상)		

\*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 「어선법」에 따른 구명설비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중

- ② (유통실태)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(336개)의 광고·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,
  -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 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,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·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.4%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,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.

### < 국표원, 안전성조사 결과 >

- ③ (안전성 조사)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 (11개), 부력보조복(28개), 수영보조용품(15개)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,
  -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,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 명령(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) 처분하였다.
  - 또한,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·수입자명,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**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**(표시사항 개선)를 하였다.
  - ※(참고)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,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인

#### - < 리콜대상 제품 세부정보 > --

·리콜대상: 부력보조복 3개 모델

사진	제 품명 (모델명)	부적합내용	사업자명
	부력보조복 (4350 OA 2 WMS FLARE COMP VEST(4))	◇ 최소 부력값 미달 - 측정값: 37N - 기준치: 40N 이상	
	부력보조복 (4350 OA 2 WMS FLARE COMP VEST(6))	<ul><li>◇ 최소 부력값 미달</li><li>- 측정값: 38N</li><li>- 기준치: 40N 이상</li></ul>	(주)오엔케이 알트레이딩
	부력보조복 (4350 OA 2 WMS FLARE COMP VEST(8))	<ul><li>◇ 최소 부력값 미달</li><li>- 측정값: 41N</li><li>- 기준치: 45N 이상</li></ul>	

- □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,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하여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,
  -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·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,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 정보포털(www.safetykorea.kr)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,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·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.
    - \* **인증정보 확인 방법**: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'인증정보검색'을 클릭후, 제품상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'제품분류코드'에서 확인 가능
  - 참고로, 금번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 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제품을 교환·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- □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금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례협의체\*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\*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: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위해 우려 제품 사전 차단 등 사전 예방 중심의 공동 대응을 위한 '통신판매중개업자'와의 공동 협력 기구

#### [붙임]

- 1. 소비자 안전인식 설문조사 결과
- 2.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 결과
- 3. 리콜명령 공표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김국호 연구관(☎ 043-870-5427), 하영선 사무관(☎ 043-870-5422), 한국소비자원 제품안전팀 서영호 차장(☎ 043-880-563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# 붙임1

## 소비자 안전인식 설문조사 결과

#### ■ 조사대상

- ㅇ (조사대상) 구명복 및 어린이용물놀이기구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
- ㅇ (조사내용) 구명복 구입 및 이용 경험, 관련 정보 인지 여부 등
- o (조사기간) 2020. 5. 29. ~ 6. 5.
- ㅇ (조사기관) ㈜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
- o (표본오차) 95% 신뢰수준에서 ±4.16%p
- □ (구입 경험) 설문대상 556명 중 131명(23.6%)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2개이상 구입하였고, 197명(35.4%)은 성인용, 228명(41.0%)은 어린이용을 구입함.

#### [구명복 구입 현황]

(단위 : 명, %)

구분	성인용·어린이용 중복 구입	성인용 구입	어린이용 구입	계
빈도 (비율)	131	197	228	556
	(23.6)	(35.4)	(41.0)	(100.0)

○ (구명복 구입 시 중요 고려사항) 구명복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'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'이 346명(62.2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수영 보조 능력' 69명(12.4%), '제품 치수' 65명(11.7) 등의 순이었음.

## [구명복 구매 시 중요 고려사항]

(단위 : 명, %)

구분	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	수영 보조 능력	제품 치수 (사이즈)	디자인	가격	기타	계
빈도	<u>346</u>	69	65	43	31	2	<u>556</u>
(비율)	(62.2)	(12.4)	(11.7)	(7.7)	(5.6)	(0.4)	(100.0)

□ (구명복에 대한 인식) 설문대상 556명 중 298명(53.6%)이 사용장소 및 사용자의 체중·수영능력 등에 따라 착용하는 구명복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.

#### [구명복 종류별 용도 인지 여부]

(단위 : 명, %)

구분	자세히 알고 있음	대략 알고 있음	전혀 모름	계
빈도 (비 <u>율</u> )	20 (3.6)	238 (42.8)	<u>298 (53.6)</u>	<u>556 (100.0)</u>

○ 설문대상 556명 중 445명(80.0%)은 구입처나 광고를 통해 구명복의 종류별 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
#### [구명복 종류별 용도 정보 제공받은 경험 여부]

(단위: 명,%)

구분	예	아니오	계
· 빈도 (비율)	111 (20.0)	445 (80.0)	<u>556 (100.0)</u>

- □ (구입 구명복의 적절성) 설문대상 556명 중 386명(69.4%)이 사용장소 및 착용자의 체중·수영능력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구명복을 구입하였음.
  - (수영보조용품) 설문대상 556명 중 346명이 제품 구매 시 '익사 등 사고예방 기능'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으나, 이 중 106명(30.6%)은 익사방지 등 사고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'수영보조용품'을 구입하였음.

#### [사고예방 기능을 우선 고려한 소비자의 구명복 구입 현황(중복응답)]

(단위: 명,%)

구분	스포츠용 구명복	부력보조복	수영보조용품	기타*	빈도수
빈도 (비율)	149 (43.1)	170 (49.1)	<u>106 (30.6)</u>	7 (2.0)	346

\* 기타 : 확인불가, 기억안남 등

○ (부력보조복) 설문대상 556명 중 226명(40.7%)은 성인용 또는 어린이용 '부력보조복'을 1개 이상 구입하였고, 이 중 217명(96.0%)은 수영을 하지 못하거나, 보호시설이 없는 자연수역에서 사용할 목적임에도 '부력보조복'을 구입하였음.

#### [부적절 부력보조복 구입 현황]

(단위: 명, %)

		부적절 구입				
구분	수영 불가하면서 보호시설 부재 장소 사용	보호시설 부재 장소 사용	수영 불가	소계	적정 구입	계
빈도	123	57	37	<u>217</u>	9	226
 비율	56.7	26.3	17.1	100.0	4.0	100.0
미뀰		96.0			4.0	100.0

○ (체중에 부적합한 구명복) 설문대상 556명 중 140명(25.2%)은 체중에 비해 부력이 미달되는 제품이거나 30kg 이하인 경우 착용이 불가한 '부력보조복'을 구입하였음.

#### [사용자 체중 대비 부적절 제품 구입 현황]

(단위 : 명, %)

	부적절 구		_		
구분	체중별 최소부력 미달	체중 30kg 이하 부력보조복 착용	빈도수	적정 구입	계
빈도	61	81	140	416	556
 비율	43.6	57.9	-	74.8	100.0
미끌		74.0	100.0		

## 붙임2

## 온라인 광고 실태조사 결과

#### ■ 조사대상

- o (조사대상) 온라인포털 '스포츠/레저-구명조끼' 및 '물놀이용품-구명조끼' 카테고리 중 안전확인신고 번호를 게시하고 있는 구명복 광고 336개
- ㅇ (조사내용) 구명복 유형별 용도 및 부력 정보 제공 여부 등
- o (조사기간) 2020. 5. 7. ~ 5. 27. / 3주
- □ (구명복 광고 유형) 조사대상 336개 광고 중 품명을 '구명조끼'로 광고하는 제품이 203개(60.4%), '부력보조복' 광고 제품이 133개(39.6%)였음.

#### [구명복 유형]

<del></del>	구명조끼*		부	부력보조복**		계			
품목	성인용	어린이용	소계	성인용	어린이용	소계	성인용	어린이용	계
개수	111	92	203	34	99	133	145	191	336
0/	54.7	45.3	100.0	25.6	74.4	100.0	43.2	56.8	100.0
70	% 60.4			39.6		100.0			

- \* 제품명을 구명조끼, 구명복 등으로 표기한 광고
- \*\* 제품명을 부력보조복으로 표기한 광고
- 조사대상 336개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정보와 비교한 결과, 270개(80.4%) 제품 은 안전확인신고와 다르게 용도나 기능을 광고하고 있었음.
  - (성인용) 성인용 '구명조끼'로 광고하고 있는 111개 제품 중 76개(68.5%) 제품은 '부력보조복'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음.
    - 성인용 '부력보조복'으로 광고하고 있는 34개 제품 중 3개(8.8%) 제품은 '스포츠 용 구명복'으로 안전확인신고된 제품이었음.

[성인용 구명복 안전확인신고 대비 광고 현황]

(단위:개,%)

광고 안전확인신고	광고 구명조끼		계	품목 불일치 제품수
부력보조복	<u>76 (68.5)</u>	31 (91.2)	107 (73.8)	76
스포츠용 구명복	35 (31.5)	3 (8.8)	38 (26.2)	3
계	111 (100.0)	34 (100.0)	145 (100.0)	79

- (어린이용) 어린이용 구명복으로 광고하고 있는 191개 제품 중 137개(71.7%) 제품 은 구명복이 아닌 '수영보조용품'으로 안전인증 후 사고예방 기능이 있는 '구명 조끼' 또는 '부럭보조복'으로 광고하고 있었음.

• 한편, 어린이용 54개(28.3%) 제품은 성인용으로 안전확인신고 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고 있었음.

#### [어린이용 구명복 안전확인신고 대비 광고 현황]

(단위:개,%)

광고 안전확인신고	어린이용 구명조끼	어린이용 부력보조복	계	품목 불일치 제품수
수영보조용품	<u>55 (59.9)</u>	82 (82.8)	<u>137 (71.7)</u>	137
성인용 스포츠용 구명복 및 부력보조복	37 (40.1)	<u>17 (17.2)</u>	54 (28.3)	54
계	92 (100.0)	99 (100.0)	191 (100.0)	191

## [구명조끼로 광고하고 있는 '수영보조용품' 광고 예시]



- □ (안전확인신고 품목별 안전정보제공 현황) 조사대상 336개 광고가 안전확 인신고 내용과 동일하게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함.
  - (용도 및 장소 고지) '스포츠용 구명복'은 수영을 못 하는 사람도 보호시설 이 있는 수역(A형) 또는 악천후 조건(B형)에서 사용이 가능하고, '부력보조 복'은 수영이 가능한 사람이 보호시설 인근에서만 사용해야 하며, '수영보조 용품'은 수영장과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장소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 익사방지 등 안전확보 기능이 없음.
    - (성인용) 성인용 구명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광고를 통해 고지한 제품은 '스포츠용 구명복' 38개 중 3개(7.9%), '부력보조복' 107개 중 10개(9.3%)에 불과하였음.

#### [성인용 광고 제품의 용도 및 장소 정보 제공 여부]

(단위 : 개, %)

구분	고지	미고지	계	
스포츠용 구명복	3 (7.9)	35 (92.1)	38 (100.0)	
부력보조복	10 (9.3)	97 (90.7)	107 (100.0)	
계	13 (9.0)	132 (91.0)	145 (100.0)	

- (어린이용) 어린이용 구명복의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광고를 통해 고지한 제품은 '부력보조복' 47개 중 4개(8.5%), '수영보조용품' 137개 중 13개(9.5%)에 불과하였고, '스포츠용 구명복' 7개 중 용도 및 사용가능 장소를 고지한 광고는 전무하였음.

[어린이용 광고 제품의 용도 및 장소 정보 제공 여부]

(단위:개,%)

구분	구분 고지		계
<b>스포츠용 구명복</b> 0 (0.0)		7 (100.0)	7 (100.0)
부력보조복	4 (8.5)	43 (91.5)	47 (100.0)
수영보조용품 13 (9.5)		124 (90.5)	137 (100.0)
계	17 (8.9)	174 (91.1)	191 (100.0)

#### ['용도 및 장소 고지 광고 예시]

스포츠용 구명복	점 요	A형, 평창식 A형 ,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 사용	B형 (해변가 또는 악천후에 사용)			
부력보조복	용도 수영을 할수있는 사람이 가까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는 물에서, 부피 또는 부력이 더 크면 사용사의 활동에 시상을 수어서 실실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					
수영보조용품	사용 목적 및 제품 설명 본 제품은 구명기구가 아니며 수영장이나 풀장 등 안전한 곳에서 사용하는 제품 으로 착용자가 물에 친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.					

- (체중별 부력정보 고지) 스포츠용 구명복·부력보조복·수영보조용품은 착용 자의 체중별 최소부력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, 체중에 적합한 제품을 착용해야 만 물속에서의 부양 등 최소한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음.
  - (성인용) 성인용 '스포츠용 구명복' 38개 중 14개(36.8%), '부력보조복' 107 개 중 27개(25.5%)는 광고를 통해 부력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.

#### [성인용 광고 제품의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제공 여부]

(단위:개,%)

, <u> </u>						
구분	구분 고지 미고지		계			
스포츠용 구명복	24 (63.2)	14 (36.8)	38 (100.0)			
부력보조복	80 (74.8)	27 (25.5)	107 (100.0)			
계	104 (71.7)	41 (28.3)	145 (100.0)			

- (어린이용) 어린이용 '스포츠용 구명복' 7개 중 1개(14.3%), '부력보조복' 47개 중 4개(8.5%), '수영보조용품' 137개 중 25개(18.2%)가 부력정보를 고지하지 않았음.

#### [어린이용 광고 제품의 부력 또는 체중별 부력정보 제공 여부]

(단위: 개,%)

구분	고지 미고지		계
<b>스포츠용 구명복</b> 6 (85.7)		1 (14.3)	7 (100.0)
부력보조복	43 (91.5)	4 (8.5)	47 (100.0)
수영보조용품	112 (81.8)	25 (18.2)	137 (100.0)
계	161 (84.3)	30 (15.7)	191 (100.0)

- (저 체중자 착용 금지 고지) '부력보조복'의 경우 저 체중자가 착용할 경우 물속에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고, 얼굴이 수면 아래로 향하게 되는 등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체중이 30kg 이하인 사람은 착용이 불가함.
  - '부력보조복' 154개 중 '체중 30kg 이하인 사람은 착용하지 말 것'을 고지하고 있는 제품은 29개(18.8%)에 불과하였음.

[저 체중자의 '부력보조복' 착용금지 고지 여부]

고브			미고지			계			
7	성인용	어린이용	소계	성인용	어린이용	소계	성인용	어린이용	계
개수	20	9	29	87	38	125	107	47	154
(%)	69.0	31.0	100.0	69.6	30.4	100.0	69.5	30.5	100.0
(70)		18.8			81.2			100.0	

## [저 체중자의 '부력보조복' 착용 금지 고지 광고 예시]



# 붙임3 리콜공표문

□ 수거등의 명령 : 3개 모델

조치 구분	수거등의 명령						
	안전관리	□ 안전인증 ■ 안전확인	□ 공급자 적	  합성 확	·인 🗆 안전기준	· 준수	
	대상구분	(높음 ←	위해도		$\rightarrow$	낮음)	
	품목명 (종류)	부력 보조복(스포츠용 구명복)	모델명		4350 OA 2 WMS COMP VES		
	브랜드명	오닐	제조구분(제	조국)	수입(중국	)	
	사업자명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	인증/신고(	번호	B025R0010-1 (인증모델:부력		
리콜	대표자명	-	인증/신고일	일자	20190918	3	
제품		< 전체 사진 >		< 부	분 사진 >		
		(TATA THE TAIL)					
위해정도							
	위해 정보	ㅇ공급되는총부력이부족할경우익	식사사고유발가능				
대처 방법	소비자 행동요령	○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○문의처에연락·방문등을통하여수리,교환,환불등조치를받을것					
리콜 문의	문의처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	연락처		02-6412-1952		

조치 구분	수거등의 명령						
	안전관리	□ 안전인증 ■ 안전확인	□ 공급자 적	합성 획	h인 □ 안전기준	준수	
	대상구분	(높음 ←	위해도		$\rightarrow$	낮음)	
	품목명 (종류)	부력 보조복(스포츠용 구명복)	모델명		4350 OA 2 WMS COMP VES		
	브랜드명	오닐	제조구분(제	조국)	수입(중국	<del>-</del> )	
	사업자명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	인증/신고	번호	B025R0010-1 (인증모델:부력	19001 ᅾ조끼)	
리콜	대표자명	-	인증/신고(	일자	2019091	8	
제품		< 전체 사진 >	(C	< 부	분 사진 >	0.000	
		HELDRE					
위해 정도	제품 결함	o (최중결함) ○ 총 부력 부적합 - 4.9.1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- 4.9.2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- 4.9.3 최소 부력값 미달 38 N  o (경결함) ○ 표시사항 미비 - 8.1.4 표시라벨 크기 미달 - 8.1.5.2 모델명 누락	I (기준 40 N)				
	위해 정보	ㅇ공급되는총부력이부족할경우익	<b>니사사고유발가</b> 능				
대처 방법	소비자 행동요령	○해당제품을보유하고있는소비자는즉시사용을중지할것 ○문의처에연락·방문등을통하여수리,교환,환불등조치를받을것					
리콜 문의	문의처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 <b>연락처</b> 02-6412-1952					

조치 구분	수거등의 명령							
	안전관리	□ 안전인증 ■ 안전확인	□ 공급자 적	합성 획	인 □ 안전기준 준수			
	대상구분	(높음 ←	위해도		→ 낮음)			
	품목명 (종류)	부력 보조복(스포츠용 구명복)	모델명		4350 OA 2 WMS FLARE COMP VEST(8)			
	브랜드명	오닐	제조구분(제	조국)	수입(중국)			
	사업자명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	인증/신고!	번호	B025R0010-19001 (인증모델:부력조끼)			
리콜	대표자명	_	인증/신고	일자	20190918			
제품		< 전체 사진 >		< 부	분 사진 >			
		HEIDRE						
위해 정도	제품 결함	o (최종결함)         ○ 총 부력 부적합         - 4.9.1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        - 4.9.2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        - 4.9.3 최소 부력값 미달 41 N         o (경결함)         ○ 표시사항 미비         - 8.1.4 표시라벨 크기 미달         - 8.1.5.2 모델명 누락	(기준 45 N)					
	위해 정보	ㅇ공급되는 총부력이 부족할 경우	우 익사사고 유발가능					
대처 방법	소비자 행동요령							
리콜 문의	문의처	(주)오엔케이알트레이딩 <b>연락처</b> 02-6412-1952						